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인공지능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이해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457

발의연월일: 2024. 11. 11.

발 의 자:이해민·조 국·황운하

김준형 • 서왕진 • 김선민

강경숙 · 권향엽 · 신장식

김우영 · 정춘생 · 차규근

박은정 · 송옥주 · 조계원

김재원 의원(16인)

제안이유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확산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미국, EU, 중국 등 주요국들은 인공지능의 혁신적 발전을 지원하면서도 그 위험성을 관리하기 위해 AI 규제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등 인공지능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이러한 국제적 흐름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가져올 수 있는 기회와 위험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음. 특히 챗 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은 인공지능 기술이 가져올수 있는 변화의 규모와 속도를 실감하게 하였으며, 이는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과 함께 적절한 규제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더욱부각시킴.

이에 인공지능 기술의 혁신과 산업 발전을 촉진하면서도 그 안전성과 윤리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인공지능 기술과 산업의 진흥을 촉진함과 동시에 인공지 능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고려하여 그 안전성과 윤리성을 확보하고, 균형 잡힌 진흥과 규제를 통해 책임 있는 인공지능의 이용과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인간 중심의 인공지능 사회 구현과 국가 경제 발전 및 국민의 권익 향상을 이끄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인공지능 시스템 및 고영향 인공지능 그리고 영향을 받는 자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다.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의 기본원칙을 정립하고 인공지능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안 제7조부 터 제14조까지).
- 라.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이용을 촉진하고 경제·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특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
- 마. 인공지능 기술이 이용됨에 있어서 필요한 윤리원칙을 확립하고 인 공지능 등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검·인증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23조부터 제25조).

바. 고영향 인공지능으로부터 사용자 및 영향받는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 등을 규정함(안 제26조부터 제29조).

법률 제 호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인공지능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공지능 기술과 산업의 진흥을 촉진함과 동시에 인공지능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고려하여 그 안전성과 윤리성을 확보하고, 균형잡힌 진흥과 규제를 통해 책임 있는 인공지능의 이용과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인간 중심의 인공지능 사회 구현과 국가경제 발전 및 국민의 권익 향상을 이끄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 2. 인공지능 시스템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한 기계 및 전자적기반을 갖춘 체계로서, 주어진 목표를 위해 다양한 수준의 자율성을 가지고 작동하여 콘텐츠, 결정, 추천, 예측 등의 출력을 생성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 3. "고영향 인공지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공지능 및 그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된 시스템으로서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과 안전, 기본권의 보호, 국가안보 및

- 공공복리 등에 중대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 가. 범죄예방, 수사, 기소, 형집행 업무에 사용되는 인공지능
- 나. 군 또는 정보기관에서 첩보, 방첩, 무기 운용에 사용되는 인공 지능
- 다. 사람의 감정인식에 사용되는 인공지능
- 라.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 또는 기계에 사용되는 인공지능
- 마.「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안전관리 대 상 어린이 제품에 사용되는 인공지능
- 바. 이민, 망명, 출입국 관리 등 분야에서 법적 지위 부여, 적격성, 위험성 평가 등에 사용하는 인공지능
- 사. 근로자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 15에 따른 노무제공자에 관하여, 채용 과정에서의 지원자 평가, 승진과 해고의 결정, 인사평가, 직무 배치, 업무 할당의 결정 등에 사용되는 인공지능
- 아.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등 혜택의 수급 자격의 평가, 부여 등에 사용되는 인공지능
- 자.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에 사용되는 인공 지능

- 차.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 등에 사용되는 인공지능
- 카. 「에너지법」 제2조제 1호에 따른 에너지, 「먹는물관리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먹는물 등의 공급을 위하여 사용되는 인 공지능
- 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 제1
 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핵물질과 원자력시설의 안전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사용되는 인공지능
- 파. 「교통안전법」 제2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교통수단, 교통시설, 교통체계의 주요한 작동 및 운영에 사용되는 인공지 능
- 하. 금융 분야에서 사람의 신용도 평가 또는 신용평점 설정에 사용되는 인공지능
- 거. 보험 분야에서 사람의 위험 평가 및 가격 결정에 사용되는 인 공지능
- 너. 법원의 재판, 행정심판위원회의 심판 등 업무에 사용되는 인 공지능
- 더. 그 밖에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의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
- 4. "생성형 인공지능"이란 글, 소리, 그림, 영상 등의 결과물을 다양

한 자율성의 수준에서 생성하도록 만들어진 인공지능을 말한다.

- 5. "인공지능산업"이란 인공지능기술 또는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제품(이하 "인공지능제품"이라 한다)을 개발·제조·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와 관련한 서비스(이하 "인공지능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 6. "인공지능사업자"란 인공지능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단체, 개인 및 국가기관 등을 말한다.
 - 가. 인공지능개발사업자: 인공지능을 개발하여 자신의 명의로 제 공하거나 이와 관련된 제품 또는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자
 - 나. 인공지능이용사업자: 자신의 책임 하에서 가목의 사업자가 제 공한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 를 제공하는 자
- 7. "이용자"란 인공지능사업자로부터 인공지능기술,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
- 8. "영향받는자"란 인공지능기술 또는 인공지능제품이나 인공지능서 비스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자신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받는 자를 말한다.
- 9. "인공지능사회"란 인공지능을 통하여 산업·경제, 사회·문화, 행정등 모든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을 이끌어가는 사회를 말한다.

- 10. "인공지능윤리"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기초로 하여, 국민의 권익과 생명·재산이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있는 인공지능사회 구현을 위하여 인공지능의 제작, 개발, 보급, 이용 등 모든 영역에서 사회구성원이 지켜야 할 윤리적 기준을 말한다.
- 11. "데이터"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 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를 말한다.
- 제3조(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의 기본원칙) ① 인공지능사업자는 인간 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인공지능이 개인의 선택과 판단 및 결정을 강요하거나 자율성을 침해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인공지능은 인종·지역·성별·종교·사회경제적 지위 등에 편 향되지 않고, 건강·고용·금융 등 각 분야에 있어서 모든 이용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공정하게 개발·이용되어야 한다.
 - ③ 인공지능을 개발 및 이용함에 있어서는 그 과정 및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인공지능으로부터 야기되는 위험과 역기능이 책임 있게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인공지능이 사람과 직접 소통하거나 상호작용하는 경우, 그 사람은 언제나 상대방이 인공지능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야 한다.
 - ⑤ 인공지능이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 영향을 받는 사람은 그 사실을 사전에 알 수 있어야 하고, 해당 결과의 이유 및 원리 등에 대하여 기술적·합리적

- 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자료 제공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 제4조(정부와 사업자·이용자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이 창의적이며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개발 및 이용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세워 추진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기술,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 능서비스가 원활히 개발 및 이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 ③ 인공지능사업자는 인공지능기술을 개발하거나 인공지능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는 인공지능 윤리 및 원칙을 준수하고, 이용자에 대하여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④ 이용자는 인공지능제품과 인공지능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사회질서에 위배해서는 아니 된다.
- 제5조(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과 관련된 사항 중 개인정보, 저작권 및 공공데이터에 관하여는 각각 「개인정보 보호법」, 「저작권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인공지능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인공지능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 제7조(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3년마다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 능산업의 진흥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인공지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제9조에 따른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인공지능,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이하 "인공지능등"이라 한다)에 관한 정책 추진의 기본방향과 전략
 - 2. 인공지능기술의 연구·개발 및 그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 3. 인공지능산업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4. 인공지능등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5. 인공지능 윤리원칙의 확산 등 건전한 인공지능 사회 구현을 위한 법·제도 및 문화의 정착에 관한 사항
 - 6.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 진흥을 위한 투자 확대 및

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 7. 인공지능등의 안전성 · 공정성 · 투명성 · 책임성 확보에 관한 사항
- 8. 인공지능 관련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의 촉진과 그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 9. 인공지능 발전 및 이용 확산에 따른 교육·노동·경제·문화 등 사회 각 영역의 변화와 대응에 관한 사항
- 10. 인공지능등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영향 받는 영향받는자에 관한 사항
- 11. 인공지능등 관련 교육ㆍ홍보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12. 그 밖에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 촉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하여야 한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인공지능과 관련된 소관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때 기본계획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⑥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7)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인공지능 실행계획)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인공지능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 실적 및 실행계획을 점검·분석하고 그 결과를 제9조의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그 밖에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국가인공지능위원회)① 인공지능 산업의 진흥 및 인공지능 신뢰기반 조성을 위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회에는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20명 이상 포함되고, 제4항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10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 1.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 및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 2. 대통령비서실의 과학기술에 관한 업무를 보좌하는 수석비서관
- 3. 인공지능 관련 과학기술·경제·인문·사회 등의 분야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 4. 그 밖에 영향받는자를 대표할 수 있는 노동, 안전, 인권 및 교육 관련 전문가로서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 ⑤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제4항제2호의 위원이 된다.
- ⑥ 위원회 위원 중 제4항제3호와 제4항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⑦ 위원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한다) 및 인공지능사업자에 대하여 법령 정비 등 관련 제도의 개선, 인공지능의 올바른 개발·이용과 인공지능 윤리의 실천, 인공지능기술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등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이하 "권고

등"이라 한다)을 표명할 수 있다.

- ⑧ 위원회는 제7항에 따른 권고등을 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공공기관의 임직원, 인공지능사업자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 및 임직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의견의 진술을 비공개로 할 수 있다.
- ⑨ 위원회가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법령·제도의 개선 또는 실천방 안의 수립 등에 대하여 권고등을 한 때에는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 은 법령·제도 등의 개선 또는 실천방안 등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⑩ 위원회의 활동은 독립적이어야 하고,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① 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① 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지원단을 둔다.
- ① 그 밖에 위원회와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그 추진상황 점검 · 분석에 관한 사항
 - 2. 인공지능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 3. 인공지능 분야의 연구개발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 4. 인공지능 관련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확충 방안에 관한 사항
- 5. 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경쟁력을 저해하는 규제의 발굴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6. 제조업·서비스업 등 산업부문 및 공공부문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 7. 인공지능 국제규범 마련 등 인공지능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8. 인공지능사회 확산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격차 해소와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사항
- 9.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 진흥에 관한 중앙행정기관 간의 업무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10. 제9조제7항에 따른 권고등에 관한 사항
- 11. 제31조 제2항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 으로 정한 사항
- 12.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 에 부치는 사항
-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업무의 공정 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 1.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2. 위원의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이 이해관 계인인 경우
- ②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및 직원을 포함한다)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의결로 기피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 제12조(분과위원회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 분야별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인공지능등 관련 특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인공지능등 관련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및 자문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국가인공지능센터)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사회 구현,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업무를 종합적으 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인공지능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지정

- 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기본계획의 수립 · 시행에 필요한 전문기술의 지원
- 2. 인공지능과 관련한 시책의 개발 및 관련 사업의 기획·시행에 관한 전문기술의 지원
- 3. 인공지능등의 활용 확산에 따른 사회, 경제, 문화 및 국민의 일상 생활 등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분석
- 4. 인공지능윤리의 확산과 실현, 인공지능 및 알고리즘의 안전한 개발과 이용 등을 위한 시책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교육· 인식개선 및 홍보
- 5.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개발·활용으로 인한 국민 안전, 인권 등에 대한 위험요인의 조사·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 6.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관련 정책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동향 분석, 사회·문화 변화와 미래예측 및 법·제도의 조사·연구
- 7. 다른 법령에서 센터의 업무로 정하거나 센터에 위탁한 사업
- 8. 그 밖에 국가기관등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 ③ 그 밖에 센터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인공지능안전연구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인공지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 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을 보호하고 인공지능사회의 신뢰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상태(이하 "인공지능안전"이라 한다)를 확보하기 위한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안전연구소(이하 "안전연구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 ② 안전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인공지능안전 관련 위험 정의 및 분석
- 2. 인공지능안전 정책 연구
- 3. 인공지능안전 평가 기준 및 방법 연구
- 4. 인공지능안전 기술 및 표준화 연구
- 5. 인공지능안전 관련 국제교류 협력
- 6. 제30조에 따른 생성형 인공지능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인공지능안전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③ 정부는 안전연구소의 운영과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안전연구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활용기반 조성

제15조(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이용 촉진) ① 정부는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인공지능기술 동향 및 수준의 조사, 기술의 연구·개발
- 2. 인공지능기술의 확산,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 3.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제품 및 서비스 개발
- 4. 인공지능기술에 관한 국내외 정보의 수집, 관리 및 제공
- 5. 그 밖에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② 정부는 인공지능기술의 안전성·신뢰성·편리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인공지능의 오작동 방지를 위한 알고리즘 및 관련 기술의 연구· 개발
- 2. 인공지능 접속 및 운용 관리 기록의 저장 및 관리 효율화
- 3. 인공지능등의 이용에 따른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등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기술의 개발과 활용
- 4. 인공지능기술의 활용에 따른 사회적 영향평가 및 역기능 방지
- 5. 그 밖에 인공지능기술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개발과 이용을 지원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과는 누구든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을 개발한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기간을 정하여 기술사용료를 받을수 있게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안전한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인공지능기술의 표준화)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 능기술의 체계적인 발전 및 인공지능서비스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 하여 인공지능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인공지능기술과 관련된 표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와 그 보급.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에 따른다.
 - 2. 인공지능기술 관련 국내외 표준의 조사 · 연구개발
 - 3. 그 밖에 인공지능기술 표준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민간 부문에서 추진하는 인공지능기술 관련 표준화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기술 표준과 관련된 국제표준기구 또는 국제표준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강화하여야 하며, 인공지능기술 표준을 제정 및 개정함에 있어서는 국제표준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그 밖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사업 등의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관련 시책의 수립 등) ①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의 개발·활용 등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생산

- ·수집·관리 및 유통·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데이터(이하 "학습용데이터"라 한다)의 생산·수집·관리 및 유통·활용 등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③ 정부는 학습용데이터의 제작, 생산, 수집, 구축 및 이용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다양한 학습용데이터를 제작·생산하여 제공하는 사업 (이하 "학습용데이터 구축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학습용데이터 구축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학습용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제공·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하 "통합제공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관리하고 민간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합제공시스템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지원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 학습용데이터 구축사업의 수행, 통합제공시스템의 구축·관리 및 비용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기업의 인공지능등 도입·활용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인공지능등의 도입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1. 인공지능등을 도입·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한 정보제공 및 컨설팅 지원
-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중소기업 등"이라 한다)의 임직원에 대한 인공지능등의 도입 및 활용에 관한 교육 지원
- 3. 중소기업등의 인공지능등의 도입 및 활용에 사용되는 자금의 지원
- 4. 그 밖에 인공지능등의 도입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창업의 활성화)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산업 분 야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창업자 발굴ㆍ육성 및 그에 대한 지원
 - 2. 창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 훈련 지원 및 창업기반시설 확충
 - 3. 인공지능기술의 가치평가 및 창업자금의 금융지원
 - 4. 인공지능 관련 개발기술의 이전 사업화 지원
 - 5. 창업자의 판로개척 및 해외진출 지원
 - 6. 해외인재 또는 해외기업 유치 활성화
 - 7.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 관련 지식·정보 등 데이터의 축적,

가공, 공유 및 활용 등의 촉진

-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을 지원하는 공공기관·단체 등에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 제20조(인공지능 융합 등의 촉진) ① 정부는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 능산업과 그 밖의 기술 및 산업 간 융합을 촉진하고 경제·사회· 문화 등 전 분야에서 인공지능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제품 및 서비스 융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인공지능 융합 제품 및 서비스 연구개발 과제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다.
 -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개발된 인공지능 융합 신제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 37조부터 제38조의5까지 임시허가 및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제21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1. 인공지능산업 전문인력 양성체제 구축
 - 2. 산학 협력 및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우수 전문인력의 양성

- 3. 인공지능산업 특성화 대학·대학원·대학부설연구소의 지정·운 영
- 4. 기술인력의 재교육
- 5. 그 밖에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2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 공지능산업 관련 국제협력을 활성화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1. 인공지능산업 관련 정보·기술·인력의 국제교류
 - 2. 인공지능산업 관련 전시회 등 홍보 및 해외 마케팅
 - 3. 국가 간 인공지능기술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등의 공동 연구·개발 및 국제표준화
 - 4. 인공지능산업 관련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
 - 5. 인공지능산업 관련 투자유치
 - 6.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인공지능윤리 및 신뢰성 확보

- 제23조(인공지능 윤리원칙의 확립)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간 중심의 안전한 인공지능의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공지능 윤리원칙(이하 "윤리원칙"이라 한다)이 확립될 수 있도록 관련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1. 인공지능이 인간의 생명은 물론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에서 개발 및 이용되게 함으로써 인간 존엄성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
 - 2. 인공지능이 국민의 행복과 국가·사회의 안녕 및 인류의 보편적 복지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도록 개발 및 이용되게 함으로써 사회 의 공공선을 보장해야 한다.
 - 3. 인공지능이 인류의 삶과 번영을 위한 도구라는 점을 고려하여 그목적 및 의도에 맞게 개발·이용되도록 함으로써 기술의 합목적성을 확립해야 한다.
 - ② 정부는 제1항의 윤리원칙을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 등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이 준수할 수 있도록 실천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 및 홍보·교육하여야 한다.
 - ③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공지능 윤리기준(그

명칭 및 형태를 불문하고 인공지능윤리에 관한 법령, 기준, 지침, 가이드라인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윤리원칙을 반영하여야 한다.

- 제24조(인공지능등의 안전성·신뢰성 확보) ① 정부는 인공지능등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이용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1.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등의 이용환경 조성
 - 2. 인공지능등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전망과 예측 및 관련 법령·제도의 정비
 - 3. 인공지능등의 안전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인증·평가·대응기술 의 개발 및 확산 지워
 - 4. 인공지능사업자 단체 등의 안전성 · 신뢰성 확보 활동 지원
 - 5. 그 밖에 인공지능등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인공지능 등을 개발·제작·제공하는 자는 인공지능 등의 안전 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 1. 인공지능 등의 작동 과정 및 결과 등이 논리적·객관적으로 설명 과 확인이 가능하도록 할 것
 - 2. 인공지능 등의 고영향 여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그에 따른 검증 등의 조치를 취할 것

- 3. 인공지능 등의 이용자의 요구를 반영하고 권익을 보호할 것
 제25조(인공지능 신뢰성 검·인증 지원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
 관은 단체등이 인공지능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자율적으로 추진
 하는 검증·인증 활동(이하 "검·인증등"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
 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개발에 관한 가이드라인 보급
 - 2. 검 · 인증등에 관한 연구의 지원
 - 3. 검 · 인증등에 이용되는 장비 및 시스템의 구축 · 운영 지원
 - 4. 검 · 인증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 5. 그 밖에 검 · 인증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소기업등이 제1항에 따른 검·인증 등을 받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정보 를 제공하거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고영향 인공지능사업자는 인공지능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인공지능 신뢰성 확보를 위한 검·인증등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국가기관등은 고영향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검·인증등을 받은 제품 또는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제26조(위험관리체계) ① 고영향 인공지능 제공자는 전 주기에 걸쳐

안전 및 인권에 대한 위험을 식별, 평가 및 완화할 수 있는 위험관 리체계를 수립하고, 관련한 문서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주기별 위험관리체계 수립 단계 및 고려사항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고영향 인공지능 제공자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때 인공지능의 목적을 고려하여 고영향 인공지능이 19세 미만인 자와 사회적 취약계층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27조(시정조치 및 조치의무) ① 고영향 인공지능 제공자는 출시한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가 오류, 결함, 오용 등으로 인하 여 사람의 건강 신체 또는 생명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거나 그와 같이 판단할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중단 또 는 회수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고영향 인공지능 제공자가 제1항의 조치를 취한 경우 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제28조(고영향 인공지능의 확인) ① 인공지능사업자는 인공지능이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과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고영향 인공지능 심의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신속히 확인하고 이를 요청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인공지능사업자 등에 대하여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검·인증 등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요청절차 및 제2항에 따른 확인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9조(고영향 인공지능 심의위원회 운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은 제29조에 따른 고영향 인공지능의 확인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 로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고영향 인공지능 심의위원회(이하 "심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20명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1. 인공지능 기술·서비스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심의 대상이 되는 인공지능 기술·서비스 관계 중앙행정기 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 2. 심의 대상이 되는 인공지능 기술·서비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 ·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30조 (생성형 인공지능 고지 및 표시)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가 생성형 인공지능에 기반하여 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용자경험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의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 제31조(인공지능산업의 진흥을 위한 재원의 확충 등) ① 국가는 기본 계획 및 이 법에 따른 시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 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야 한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인공지능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업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 등 민간이 적극적으로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산업의 발전단계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투자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2조(실태조사, 통계 및 지표의 작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계청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 및 인공지능등 관련 시책과 사업의 기획·수립·추진을 위하여 국내외 인공지능등에 관한 실태조사, 통계 및 지표를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통계와 연계하여 작성·관리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 및 지표의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 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통계 및 지표의 작성·관리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3조(업무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 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과 업무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장 벌칙

제3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1.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 2. 제35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 원
- 제35조(과태료) 제27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때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추진된 인공지능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집행, 인공지능등의 개발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